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무법인 및 세무사의 정산보고서 검증 등〉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8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세무법인 및 세무사의 정산보고서 검증(안 제27조제2항)	3
2. 정산보고서 부실 검증 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및 벌칙 부과 (안 제27조의2 및 제42조제2항제4호 신설)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입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세무법인 및 세무사의 정산보고서 검증(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 수행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 회계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 (실무수습 등을 이수 + 결격사유 미해당 + 회계법인 또는 다른 감사반 미소속) <신 설>	○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 수행 - (현행과 같음) - 세무법인 - 3명 이상의 세무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원)¹⁾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들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²⁾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음.³⁾

아울러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⁴⁾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라 감사인은 보조사업 또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액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및 동 사업 집행 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등 검증절차를 진행함.

그런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시기가 기업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에 해당하여 감사인 수입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정부는 2023년 6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⁵⁾하였는데, 이에 따라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사업의 수도 2023년 기준 3억원 이상 9,865개에서 1억원 이상 20,489개로 증가하였으며, 1억원 이상의 민간 보조사업의 수도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5) 대통령령 제33546호(2023. 6. 20. 시행)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억 이상	8,128(7.8)	9,081(9.0)	9,494(9.8)	10,106(10.4)	10,624(10.7)
1억원~3억원	4,267(4.1)	5,112(5.1)	5,405(5.6)	6,153(6.3)	6,632(6.7)
3억원 이상	2,190(2.1)	2,860(2.8)	3,118(3.2)	3,087(3.1)	3,233(3.3)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는 경우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사업비 정산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업무수행 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와 의견서 작성은 「지방자치법」(이하 “지방자치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⁶⁾에 따라 “지방의

6)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

회 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가 결산서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정산보고서에 대해 현행 감사인 이외에 세무법인 또는 3명 이상의 세무사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는 ‘단순 지출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증빙 확인’ 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서류 구비의 완전성, 계약절차·증빙서류 진위여부, 집행기준 위배 확인 등을 검증하는 업무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 신고·신청 등 대리업무 수행으로 제한되어 있어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검증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에 관한 증명·계산·정리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세무사를 검증 시행자로 추가할 경우 업역 갈등의 소지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업무 비교]

구 분	직무범위
회계법인 및 감사반	독립적인 제3자로 일정 준거기준에 의거 검증업무 가능 -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 등[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세무법인 및 3명 이상 세무사	납세자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위임자 이익으로 업무수행 - 조세 신고·신청·청구 등 대리, 세무관련 서류 작성, 장부작성 대행, 상담 등 자문 등의 업무[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서는 간이한 검사 수행으로 규정이 가능함을 판시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와는 수준 및 대상이 상이하다는 입장임.

한국공인회계사협회는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 중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검증업무 담당자 섭외 애로에 대

해 소수의 감사인⁷⁾이 정산 검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감사인의 참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임.

[정산 검증 대상 보조사업수 및 검증기관 참여 현황]

결산연도	보조사업수*	보조사업수* (감사인 확인)	검증 수행 감사인(a)	전체 감사인(b)	참여율 (a/b)	※ 상위 10개 감사인 실적
2022년	7,742	6,843	307	487	63%	6,843개 중 2,713개(40%)
2023년	18,342	16,294	371	495	75%	16,294개 중 6,279개(39%)

* 시행령 개정(2023.6.)으로 검증대상이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

* 감사인 확인이 가능한 검증 대상 보조사업수

※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또한, e나라도움 구축과 함께 연중 상시점검체계로 전환되었고, 매월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검증)하고 있어, 사업기간 종료 후인 12월 이후(일반 기업의 결산시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으며, 검증비용은 상위보조사업자의 표준수수료표에 따라 시장가격이 고정(보조금 3억 이하 약 100만원)되어 있는데, 경쟁 심화로 검증비용이 적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부실검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국가재정 누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7) 2023년 기준 상위 10개 회계법인이 39%의 검증 업무 담당

[상위보조사업자 등 표준수수료 비교]

(단위: 천원)

구분	보조금 규모 구간별 표준수수료				
	1~3억	3~5억	5~10억	10~30억	30억~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문체부 산하)	991 1,045	1,152 ~1,341	1,390 ~1,538	1,727 ~1,793	1,862 ~2,263
주택도시보증공사 (2024, 국토부 산하)	1,060		1,270	1,500 ~ 3,530	
복지부 (2023)	1,000	1,100	1,200	1,500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024, 해수부 산하)	1,185	1,515	1,647	1,845	2,043 ~2,700

※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현행 감사인 외에도 세무법인 또는 3명 이상의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 중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검증업무 담당자 섭외의 애로를 해소하고, 건강한 경쟁을 통한 적정 검증 비용의 형성을 도모하여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

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⁸⁾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⁹⁾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¹⁰⁾에 따르면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해 관련 증빙을 대사하고 준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검증하고, 그 집행잔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므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비인증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증업무에 해당하나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로서 ‘검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8)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9)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5. 7. 8.

[공인회계사 업무 유형 - 인증업무와 비인증업무 구분]

용어	정의	예시
인증업무	준거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 표명	
감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에 대한 의견 표명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검토	질문,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 제한적 확신에 대한 의견 표명	반기/분기 재무제표 검토, 지자체 재무제표 검토 등
기타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인증대상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확신수준 달리짐	
비인증업무	인증업무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고, 관련 보고서에 인증, 감사, 증명, 검토 등의 단어 사용 불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세무대리,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 등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154p)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성격이 제3자 인증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음.

둘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으로 규정¹¹⁾하고 있고, 세무사의 직무¹²⁾에 대해 「세무사

11)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12)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법」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 세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격사법상 두 직무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정산보고서의 검증 업무가 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업비 집행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기존의 ‘회계감사’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로 정하겠다는 것이 이 사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건 조례안의 개정 취지임.

또한,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에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감사를 받게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탁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의 판결문을 고려하였을 때 대법원이 세무사가 현행법상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세무사의 업무를 기존의 세무대리 업무 외에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³⁾

13) 세무사의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법률안명	제안일자	주요내용	상임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55호)	2024. 10. 17.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	기획재정 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66호)	2024. 10. 29.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여----- ----- -----.
<신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신설>	2.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신설>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3명 이상의 세무사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2

2. 정산보고서 부실 검증 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및 벌칙 부과 (안 제27조의2 및 제42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 있는 경우 검증기관 선정 제한·보조금 통합관리망 게재 ○ 벌칙 부과 － 정산보고서 검증 거짓으로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규모는 109조 1,000억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2023년에 부정수급 적발건수 493건, 금액은 699억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보조금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86.7	97.9	102.3	102.3	109.1

※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2020년	3,853	2,662	132	31.5	3.4
2021년	4,243	1,757	231	34.8	5.4
2022년	4,603	2,379	260	98.1	5.6
2023년	7,521	5,340	493	699.8	6.6
합계	27,395	14,872	1,270	889.2	4.6

※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감사원·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주관 감사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부적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따라 1억원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들은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검증기관”이라 함)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기관의 검증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

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검증기관에 대한 검증기관 선정 제한 규정¹⁴⁾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증의 고의·과실에 따른 오류·누락 발생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검증기관 선정이 제한되고, 현행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벌칙 규정은 거짓 보고한 보조사업자와 공모한 검증기관(형법상 공범)까지 처벌이 가능¹⁵⁾하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증빙의 중대한 착오·누락 시 검사인을 징계할 수 있고, 고의로 허위 보고 시 벌칙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검증기관 선정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해

-
- 1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 결과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 15) (법무법인 태평양, 2023. 11.) 보조사업자와 검증기관이 공모하여 고의로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형법상 공범규정을 근거 모두 처벌이 가능

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증기관의 부실 검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검증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에 대해서는 검증보고서 검증 관련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상에도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의무등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세무법인 및 세무사 3인 이상에 대해서도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법인 등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더라도 해당 검증기관이 검증 관련 거짓 보고를 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의무등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¹⁶⁾과 달리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거짓 보고에 대한 별도의

16) 「공인회계사법」 제53조(벌칙)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

별칙 규정이 없이 동 법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만을 규정¹⁷⁾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 17)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 ----- ----- ----- ----- ----- -. ----- 제27조의3----- -----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감사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검증기관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현행	개정안
	<u>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3년</u> <u>2.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2년</u> <u>3.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1년</u> <u>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게재하고, 해당 검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생략)	제27조의3(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42조(벌칙) ① (생략)	제4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

문의처

02)6788-5152